

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26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제96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3차 총무위원회(2001. 10. 29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장일룡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 (평)	지목 (구조)	시설개요	소요예산
계			11,198 (3,386)			5,520,000
감천1동복지 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	토지	467-1 467-2 702-1 706-5 729	5,045 (1,526)	대		4,370,000
	기존 건물	702-1	5,163 (1,560)	철골경량조 철근콘크리트	· 지하1층, 지상4층 주차장, 주민회관 탁아실, 체육시설 예식장 등	400,000
	신축 건물	467-1 467-2	990 (300)	철근콘크리트	· 지하1층, 지상2층 주차장, 주민회관 노인쉼터 등	750,00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, 감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회관 및 주차장,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
-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통과시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준공후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